

[보도자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Seou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주소 :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2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lsadd420@gmail.com / 홈페이지 : www.sadd.or.kr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신아재활원 인권침해 해결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농성선포 기자회견
보도일자	2021. 03. 03. (수)
담 당	이진희(010-5352-7235), 한명희(010-3170-5909)
분 량	24쪽

<본 자료는 <http://www.sadd.or.kr> [자료실→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아재활원 인권침해 해결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농성선포 기자회견

- ☐ 일 시 : 2021년 3월 4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시청 후문
☐ 주 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발언순서 :

사회	사)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수경
발언 1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팀장 진은선
발언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김준우
발언 3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민구
발언 4	탈시설장애인당 서울시장보궐선거 재난대응 후보 이희영
발언 5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수정
발언 6	사)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이형숙

※ **퇴소를 요구하는 거주인 당사자의 직접 인터뷰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실명과 사진이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54개 단체회원과 490여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 2020년 12월 경,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아재활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거주인 114명 중 56명 확진, 종사자 69명 중 20명 확진, 2021.1.10. 기준)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의 긴급탈시설을 촉구하는 농성을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40일간(2021.2.8. 기준) 진행했습니다.

○ 2020년 12월 30일, 서울시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 보낸 공문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조치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재난적 상황인 집단감염 긴급조치로 거주인 전원에 대하여 ‘긴급분산조치’는 이행(2021.1.11. 최초 확진자 발생 후 18일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아재활원이 긴급분산조치 이행 완료 후 3일 만에 거주인에 대한 재입소를 추진(2021.1.14. 최초 16명 재입소 이후 지속 재입소)하였고, 105명이 재입소한 상황이 확인(2021.2.17. 기준)되었습니다. 거주인 105명의 재입소는 서울시가 약속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조치 계획’을 파기한 것입니다.

○ 2021년 1월 25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시의 무책임을 규탄하고 자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선포투쟁>을 결의하고, 신아재활원 앞에 농성장을 설치한 뒤 이를 사수하며 지속적인 긴급탈시설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 2021년 1월 27일 서울시는 “신아재활원 탈시설 TF” 운영계획 발표와 함께 ‘서울시 탈시설 민관협의체’에서 최종 결과를 논의할 것을 발표하였고, 1월 28일 서울시청 앞 <장애인 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정리 기자회견>을 열어 “신아재활원 탈시설 TF” 및 “서울시 탈시설 민관협의체”가 시설 유지 논리를 대변하지 않고 신속하게 당사자들의 자립생활 및 인권을 최우선으로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을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신아원 재입소 이후 지속되는 일상적 인권침해 상황에서 2021년 2월 22일 신아재활원 거주인 강**은 신아재활원과 거주시설 연계사업을 진행하던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이하 ‘숨센터’)과 송파구청에 ‘탈시설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상황이 신아원에 알려진 후 강**

은 옷도 제대로 챙겨입지 못한 채 신아원을 탈출해 숨센터에 탈시설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 ‘기자회견문’ 참고)

○ 이후 ‘숨센터’는 긴급 활동지원연계와 임시거처 마련 등 탈시설 지원을 진행하며 퇴소 조치를 위한 상담 진행 중 화학적 구속(거주시설 내에서 약을 복용하게 함으로써 거주인을 통제하는 것)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 2021년 2월 26일 <강** 퇴소 이행 서울시 면담>에서 ‘신아재활원 퇴소자 강** 긴급 퇴소 및 탈시설 지원 요구안’을 통해 강** 사례를 인권침해로 판단하도록 하여 신아원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긴급대책마련을 이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 거주시설의 수직적 관계와 폐쇄적 구조는 일상적 인권침해 발생 시 내부적으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게 하고, 도움을 요청할 외부통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일상적 통제와 약물에 의한 화학적 구속이 관리가 아닌 인권침해임을 한국사회가 이해하고, 당사자의 퇴소 여부를 시설장이 판단하도록 하는 이해관계를 해체할 수 있도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1년 3월 4일 (목) 오후 2시 서울시청 후문에서 <신아재활원 인권침해 해결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농성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 1. 서울시 요구안 및 기자회견문

붙임 2. 강** 신아재활원 자필 퇴소 신청서

붙임 3. 신아재활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긴급농성 경과보고

붙임 4.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서울시 긴급 요구안

붙임 5. 긴급탈시설 정책 요구안

※ 참여하시는 참여자들과 기자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요구안

■ 서울시는 강**의 개별의사를 존중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라.

1. 신아재활원 퇴소자 강**에 대한 긴급지원

- (1) 당사자의 의사에 기반한 긴급 퇴소지원
- (2) 신아재활원 퇴소 절차 즉시 이행

2. 신아재활원 퇴소자 강**에 대한 탈시설-지역사회 정착 즉시 이행

- (1)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입주 긴급 지원
- (2)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긴급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및 24시간 보장
- (3) 긴급 탈시설 이행 후 송파구청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 고용 유지
- (4) 신아재활원 내 장기적 약물복용에 따른 영향 분석, 건강검진 등 의료적 지원

■ 서울시는 신아재활원 내 인권침해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진행하라.

■ 서울시는 탈시설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신아원 긴급탈시설 이행과 탈시설계획을 수립하라.

1. 신아재활원은 시급시 과밀성을 낮추어 재감염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1인1실(1화장실)을 기준으로 입소기준 전환 (현재 신아재활원 침실수 54개)

2. 신아재활원 54명 외에는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임시거주지를 우선 제공하여 분산-자립 긴급 추진

3. 분산-자립 지원을 위해 신아재활원은 입소자들에게 탈시설 지원 전문 상담자 배치 (루디아의집의 경우 특별조사단 구성운영)

4. 신아재활원은 6개월 내에(2021.8월까지) 분산을 완료한다는 명확한 목표 제시

5. 분산-자립한 입소자들이 입주한 지원주택 등의 운영사업자 선정은 기존의 지원주택운영사업자 공개 선정과정(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는 시설폐지 결의 후 참여)을 거쳐서 진행

■ 탈시설 65세 이상자와 65세 도래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지속적인 지원과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서울시 추가급여 확대

1. 만65세 이상자/도래자에 대한 서울시활동지원서비스는 절대 중단 되어서 안됨.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2. 탈시설장애인의 서울시 추가급여는 월 240시간, 4년으로 확대해야 함

■ 과거 시설비리와 인권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과 인강재단의 탈시설 추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합의 약속 이행

1. 탈시설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고용승계를 위한 서울시의 대책 필요 (지원주택운영사업자 선정시 고용승계 의무화, 시립기관들의 고용승계 의무화 등)

2. 향유의집 부지개발을 통한 탈시설 촉진, 이를 위한 서울시+경기도 협업 모델 개발을 서울시는 노력해야 함 (서울시 관외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추진 시범사업)

3. 서울시 탈시설 2차 5개년 목표 인원 800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 공급 확대

■ 장애인지원주택 입주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주택 실질적인 예산 지급

1. 장애인지원주택 인건비는 장애인거주시설지급 방식(직급, 호봉에 따른 지급방식)으로 분리하고 현실성있게 지급

2. 운영비에 있어서 주거코치 등의 상시인력 필요성이 인정될 때 그에 따르는 예산지원

3. 2021년 예산 수립시에는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예산 수립

기 자 회 견 문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긴급분리조치 이행하고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하라!

지난해 12월,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다. 코로나19를 예방한다며 세운 정부의 예방적 코호트 방침도, 방역을 위해서 시설 방문과 외출 금지를 실시했던 신아원 방침도 실패로 입증되었다.

안전이라는 이유로 거주인의 탈시설 지원을 할 수 없었고, 관리라는 이유로 거주인을 만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설 출입이 자유로웠던 시설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 피해는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했던 신아원의 거주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더욱더 안전하지 못한 상황을 만들었고, 확진된 거주인은 왜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는지, 신아원에 남겨진 거주인은 왜 남게 되었는지 제대로 된 정보도 모른 채 또다시 감금의 생활은 지속되었다. 영문도 모른채 그렇게 가평 어딘가로 이동한 거주인은 여기가 어디이고 언제까지 머물게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신아원이 더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신아원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장애인 운동의 외침으로 긴급분산조치를 이루어내었으나, 전국 각지로 흩어졌던 거주인들은 2주간의 자격리의 기간을 채우지도 못한 채 다시 시설로 재입소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설로 돌아간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 5년간 장애여성공감에서 탈시설을 지원했던 거주인 강**은 지난 2월 22일 월요일 오전, 탈시설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꺾꺾 눌러 담은 편지를 장애여성공감과 송파구청에 발송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시설에서 알아채자 두려운 마음에 소지품도 챙기지 못한 채 슬리퍼 차림으로 장애여성공감 사무실로 찾아왔고, 그 시간 이후로 신아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첫째, 거주인과 외부와의 소통 차단 및 정보의 폐쇄이다.

집단감염 이후 확진/비확진 판정을 받은 거주인들은 충분한 정보제공도 받지 못한 채 코호트 격리 되었고, 긴급분리조치 이후 공감에서 거주시설 연계사업을 지원했던 거주인들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여 두 가지 사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거주인은 코로나 확진, 거처의

이동 등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또 하나는 공감과 연락을 취했던 거주인들의 휴대전화를 신아원 관리자가 압수하는 등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다. 점점 거주인들과의 연락은 두절되었고, 신아원 관리자의 감시는 더욱더 심해져 거주인들은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둘째, 거주인은 탈시설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서울시 탈시설 정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거주시설 연계사업은 공모사업에서 기본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장애여성공감과 신아원은 몇년에 걸쳐 거주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해왔고, 이 과정에서 탈시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설의 태도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동안 신아원은 거주인을 대상으로 한 연계사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는 곧 거주인의 탈시설 욕구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신아원에서 탈출한 강**은 탈시설을 하고 싶다는 편지를 썼던 것이 발각되자 사무실에 끌려가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고, 혼날까 무서워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것은 곧 거주인의 탈시설 욕구를 신아원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장기간의 거주시설 생활은 자신의 욕구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오히려 시설은 당사자의 의사를 묵살한 채 단순하게 회유하려는 모습을 보일 뿐이다. 거주인에게 원가족이 없는 경우 시설장이 보호자 역할을 하고 거주인의 권리를 대행하는 상황에서, 가족처럼 여긴다는 점은 무한정 관리의 수위를 높이는 장치가 될 뿐이다. 거주인의 휴대폰과 통장을 압수하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정신과 약을 매일 원장이 보는 앞에서 먹어야 하는 것이 신아원 관리자가 말하는 가족관계란 말인가? 가족관계는 이러한 부당한 처우를 가리기 위한 알리바이로 동원될 뿐이다.

셋째, 거주인의 행동을 약물로 억누르는 화학적 구속을 고발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DC)에 등록된 습관화(F98.9), 지연, 지체(F89)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이 많이 받는 진료코드로써 정신과적 질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정신성 약물이 처방되기도 한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약물 복용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화학적 구속은 한 개인을 무력하게 만드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지난 2월 26일 강** 퇴소 이행 서울시 면담에서 신아재활원 퇴소자 강** 긴급 퇴소 및 탈시설 지원 요구안을 통해 강** 사례를 인권침해로 판단하도록 하여 신아원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긴급대책마련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이것이 비단 강**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도 단정 지을 수 없다.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문제행동’ 또는 ‘도전행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약물 치료가 병행되거나 행동치료를 하기도 한다. 강**은 성인이 되고 난 이후 음주와 관련된 이유로 약물 복용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시설에서는 음주를 금지하면서 동시에 약물을 처방하였다. 강**에게는 알코올 의존성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물이 처방되었고, 정신병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약물 또한 처방되었다. 강**이 어떠한 상황에서 진단을 받았는지 제대로 된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설 내 약물의 오·남용은 건강상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정신의학협회(World Psychiatric Association, WPA)에서는 2009년에 지적장애 환자의 ‘문제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정신과 약물 사용 원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때 당사자가 정신과 약물과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하며 조력자가 약물 복용 과정에서 “함께 하는 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우리는 더 주목해야한다. 신아원 내의 모든 거주인을 대상으로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여 거주인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곳에 살 이유는 없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후 또다시 과밀화된 시설 내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거주인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회가 기대하지 않는 존재들로 여기며 당연하게 장애인은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옆에는 117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신아원이 있다. 열린 문을 두고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이다.

서울시는 강**의 개별의사를 존중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라.

서울시는 신아재활원 내 인권침해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진행하라.

서울시는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지원 체계 구성을 통하여 30인 이하로 규모를 축소하고,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서울시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을 신속히 진행하라.

서울시는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긴급분리조치 이행하고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하라.

2021년 3월 4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련법령

1.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

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9. 1. 15.>

1. 제59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 3.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2. 8.>

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5. “재활의료”란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인(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

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행위를 말한다.

6. “재활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원장님 이사장님
저 찾거 마세요.
의무실 선생님
약행적 오지 마세요.
통장. 도장. 내꺼 전화
주세요.
생제과 찾거 마세요.
지금 잘 살아요.

21.02.26

붙임 3. 신아재활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긴급농성 경과보고

[신아재활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긴급농성]

[경과보고]_02.08_농성 40일차

일자	내용
2020년 12월 24일	- 1차 검사 2명(입소자, 관계자 각 1명) 보건소 연락
2020년 12월 25일	- 신아재활원 최초 확진자 발생(총 6명)
2020년 12월 26일	- 확진자 35명
2020년 12월 27일	- 신아재활원(거주인 39명, 종사자6명) 총 45명 확진자 발생
2020년 12월 28일	- 신아재활원 10명추가 확진(총 55명 추정) - 신아원에서 코호트 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
2020년 12월 28일	- 서울특별시시의회(정의당) 권수정 의원실 면담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과장 면담
2020년 12월 29일	- 긴급 기자회견 기자회견(2시, 서울시청) 지금 당장! '긴급탈시설' 이행하라!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수용시설 신아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기자회견
2020년 12월 29일	- 탈시설지원법을 발의한 68명의 국회의원에게 신아재활원 상황 공유
2020년 12월 29일	- 서울시 2차 장애인복지정책과 과장 면담 - 서울시 3차 장애인복지정책국장 면담 - 서울시 4차 장애인복지정책실장 면담, 서울시청과의 합의안 작성
2020년 12월 30일	- 기자회견(오후2시/정부서울청사)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집단감염 '긴급분산조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호트 격리 중단 결정촉구 기자회견 - 국무총리실 국회협력관을 통한 민원접수. - 서울시 복지정책과(합의안) 최종 공문 수신
2020년 12월 30일	- 신아재활원(61명 확진, 31명 병원 이동)
2020년 12월 31일	- 신아재활원(65명 확진)
2020년 12월 31일	- 기자회견(3시/해치마당)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집단감염 '긴급분산조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호트 격리 중단 결정촉구 긴급농성 돌입 기자회견" (★해치마당-농성시작) - 신아재활원 코호트격리 중단 긴급구제 국가인권위 진정접수(문애린/이형숙/김종옥/서울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 배미영/이진희/조미경/김준우/옥순/박김영희)
2020년 12월 31일	- 지지방문: 움직이는 청소년엑시트 농성장
2020년 12월 31일	-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2021년 1월 2일	- '긴급분산조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호트 격리 중단 결정 촉구 긴급 농 성 - 지지방문: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2021년 1월 4일	- 기자회견 및 행진(3시/해치마당-금세기빌딩(구 국가인권위원회)) 신아재활원 긴급분산조치 및 긴급탈시설이행 공간이동(2021년 전장연 신년투쟁 2021년 장애인차

	별첨별 투쟁선포식/우동민동지추모제 진행)
2021년 1월4일	- (서울시)신아재활원 거주인 114명중 78명 분리조치 - (보건복지부)신아재활원 거주인 114명중 감염자 55명/분리조치 59명 >> 거주인 총 117명, 종사자 67명 (총 184명) >> 확진자 : 거주인(55명), 종사자 (13명) ->총 68명 >> 병원 이송 총54명 (장애인44명, 종사자10명) >> 이송대기자 14명(장애인10명, 종사자 4명)
2021년 1월5일	- 한국장애인포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신아원 코호트격리 사태 유엔특보 진정
2021년 1월5일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과 신아원의 긴급분산조치 상황에 대한 요구전달
2021년 1월 5일	지지방문: 정의당,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
2021년 1월 5일	-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춘현 복지국장 면담. 신아원 관련사항 요구 전달 → 확진자 전원 이송, 비확진자 분산조치 논의 필요 - 복지부 양성일 차관, 신용호 과장 송파구청 방문, 서울시, 송파구청, 신아원 등과 회의 진행 - 국가인권위원회 면담
2021년 1월 6일	- 지지방문: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의회 권수정의원, 정의당 정재민 서울시당위원장, 서울시당 사무처장
2021년 1월 6일	- 보건복지부 면담요청서 발송: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긴급탈시설 지원 대책 면담 요청
2021년 1월 7일	- 지지방문: 기본소득당 신지혜대표, 용혜인의원
2021년 1월 7일	-신아재활원 확진자 총 70여명(거주인 5명, 생활지도사 14명) - 시설 내 76명 코호트 격리 >> 거주인 58명, 종사자 18명(생활지도원 14, 조리원 3, 사무원 1) 격리중 >> 시설 내 격리 : 확진자 2명(종사자 2), 음성 74명(거주인 58, 종사자 16)
2021년 1월 10일	- 신아재활원 상황 >>거주인 총 114명(확진자 56명/ 음성 58명) >>종사자 총 69명(확진자 20명/음성 49명)
2021년 1월 12일	- 신아재활원 상황 - 총 76명 확진. (거주인: 56명 / 생활지도원 20명) - 병원/생활치료센터 71명 이송(거주인 56명, 종사자 15명) (추가확진 5명 이송처 파악중) → 장혜영의원실 자료 >>가평오륜비전빌리지 61명 / 호텔스카이파크센트럴 명동 33명. 총 94명) >> 20명. 병원이동. → 보건복지부 확인 - <u>신아재활원(전원 분산조치)</u>
2021년 1월 13일	- 전장연 호텔스카이파크센트럴 명동 답사(거주인: 25명, 종사자 5명) / 가평오륜빌리지 64명 예상 - 1월 16일(토)~17일(일) 까지 격리상태이고 17일(일), 18일(월)에 비확진자 코로나 검사 후 순차적으로 14일부터 신아원에 입소할 예정임을 확인
2021년 1월14일	-1시/서울시장: -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재입소 반대 ! '긴급분산조치' 유지와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팀장 5차 면담 진행 - 면담결과: 복지정책과장이 송파구와 신아재활원을 직접방문하여 상황 확인하기로

	함, 재입소결정주체 확인 후 공유. - 지방방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년 1월 14일	-신아재활원 재입소 시작(총 16명)
2021년 1월 15일	- 기자회견(2시/신아재활원 정문앞) 신아재활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신아재활원 원장,송파구청 면담 &대표단 면담진행. - 면담결과: 16인 외 재입소 중지 및 긴급분산조치 유지. 19일 오전 면담 진행
2021년 1월 19일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6차면담(신아원, 송파구청, 서울시, 전장연) - 면담결과: 서울시/송파구 58명 재입소 추진 강행
2021년 1월 19일	- 기자회견(4시/신아원) [더이상 시설로 돌아갈수 없다_신아원 긴급분산조치 유지하라!!! 긴급 기자회견 - 신아재활원 비확진자 58명 거주인 전원 재입소 확인
2021년 1월 21일	- 지방방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2021년 1월 22일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팀장 7차 면담(서울시, 전장연) - 탈시설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요구를 시작으로 한 합의안 이행 촉구
2021년 1월 25일	-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선포투쟁> 기자회견 >> 일시/장소: 오전 11시/신아원 정문 앞(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51-23) - 책 '시설사회' 낭독회 >> 일시/장소: 오후 2시-4시/신아원 정문 앞(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51-23) - 긴급탈시설 촉구 문화제 >> 일시.장소: 6시-9시/신아원 정문 앞(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51-23) - 신아재활원 앞 천막농성 시작
2021년 1월 26일	-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결의대회
2021년 1월 27일	- 신아재활원 앞 농성장 철수 - 서울시 “신아재활원 탈시설 TF” 운영계획을 발표 및 TF에서 도출된 정책 자문의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 탈시설 민관협의체’에서 최종 결과를 논의할 것을 발표
2021년 1월 28일	- 장애인 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정리 기자회견 - 신아재활원 탈시설TF 1차 회의 진행 > 2차 회의시 프리wel(지원주택), 인강원(시설변환) 사례발표 및 논의
2021년 2월 4일	- 신아재활원 탈시설TF 2차 회의 진행 > 3차 회의 신아원 방문
2021년 2월 8일	- 코로나시대 장애인거주시설 '긴급탈시설' 쟁취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투쟁 선포 기자회견 - 광화문 해치마당 농성장 철수 (40일차)
2021년 2월 17일	- 신아재활원 탈시설TF 3차 회의 진행 > 향후 TF 2차례 더 진행예정 > 신아원 탈시설추진계획서 초안(윤재영, 박경수 교수), 신아원 자체적 계획서 작성
2021년 2월 22일	- 신아재활원 강** 퇴소, 긴급탈시설지원 요청 > 송파구청,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에 탈시설을 원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신아원에서 물품압수 및 폭언, 인권침해 상황에서 탈출.
2021년 2월 26일	- 신아재활원 강** 퇴소 이행 서울시 면담 > 신아재활원 퇴소자 강** 긴급 퇴소 및 탈시설 지원 요구안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서울시 긴급 요구안

- 제출일 : 2021.02.19.
- 제출자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제출처 : 서울특별시 복지실장

1. 활동지원서비스는 생존권입니다. 탈시설 65세이상자와 65세도래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 현황

- 탈시설한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서울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120시간 제공하였으나, 2021년 2월로 중단됨.
- 65세 이전에 탈시설을 했으나 최근 만65세가 도래한 중증장애인의 서울시비 활동지원서비스(탈시설 120시간, 사지마비와상 해당자 200시간)도, 2021년 2월로 중단됨.
- 기 이용하던 활동지원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하면 중증장애인에게는 생존의 위협과 같은 상황이며, 이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 승인사항이기에 서울시 내부결재 중이라고 답함.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는 최장 60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2월안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증장애인당사자는 적어도 60일 동안은 서비스가 중단됨.
- 서비스가 중단된 중증장애인당사자의 삶의 고통은 더할나위 없고, 활동지원사 수급도 2달동안 급여가 없기 때문에 기존활동지원사를 해고하고, 급여가 확정되면 다시 활동지원사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 존재. 당사자입장에서는 이러한 급여문제 때문에 자신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계속 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
- 서울시 탈시설추가급여는 월 120시간, 2년동안 지급되고 있음. 이는 2년동안 지역사회의 정착화 과정에서 필요한 긴급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였음. 그러나 실질 지원경험을 바탕으로 2년이라는 기한이 너무 짧고 (서비스 연계의 어려움), 120시간이 너무 작아(하루 4시간, 야간공휴일 적용하면 실질 3시간) 탈시설장애인의 긴급한 상황을 보충적으로 해소하기에 역부족임. 따라서 기간을 확대하고 서비스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함.

□ 요구사항

1. 만65세 이상자/도래자에 대한 서울시활동지원서비스는 절대 중단 되어서 안됨.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함.

2. 탈시설장애인의 서울시 추가급여는 월 240시간, 4년으로 확대해야 함.

2. 코로나 감염 장애인거주시설의 긴급탈시설 추진(신아재활원)을 6개월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현황

- 신아재활원은 117명의 입소자로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44개소 중에 100인이상의 대형시설 (총3개소) 중 하나임.

<장애인복지법> 제59조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3. 30., 2019. 1. 15.>

- 신아재활원은 서울시내에 위치에 있어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밀한 대형시설수용을 유지해 왔고, 그 결과 집단감염에 취약하여 현재의 감염상황을 낳음. 현재에도 집단성과 과밀성을 해소하지 않고 재감염위험이 있음에도 다시 본원으로 105명이 복귀한 상황임.

‘긴급 탈시설(Emergency Deinstitutionalisation)’이란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0조(건강권), 제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제19조(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를 근거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20년 8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조치로서, 집단 감염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즉각적인 탈시설 조치를 취함으로써 ‘단기간 시설 밖에서’ 우선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구조적인 방역대책**입니다.

- 현재 거주인들은 신아재활원 복귀 이후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자유로운 통화가 원활치 않은 상황이 포착되는 등 외부와의 소통과 정보접근이 통제되고 있음. 또한 거주인 중 집단감염 이후 지속적으로 탈시설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당사자가 있음에도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함. 긴급탈시설지원을 위해선 시설 운영자 뿐만 아니라 민간/외부 자원이 적극 참여하여 당사자의 인권이 최우선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신아재활원의 긴급탈시설지원을 위해서 서울장차연은 <서울시 탈시설민관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요구하였으나 회의는 단 한차례도 소집되지 않고, 그 사이 100명이상의 장애인이 신아재활원으로 복귀한 상황임. 서울시는 탈시설민관협의체는 열지 않고 신아재활원의 탈시설지원을

위한 별도의 TF를 운영하고있으며 이를 서울장차연을 의도적으로 논의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사료됨.

□ 요구사항

1. 신아재활원은 1인1실(1화장실)을 기준으로만 입소하여 시급시 과밀성을 낮추어
재감염의 위험도를 낮춰야 함. (신아재활원 침실수 54개)
2. 신아재활원 54명 외에는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임시거주지를 우선제공하여 분
산-자립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함.
3. 분산-자립하기 위하여 신아재활원은 입소자들에게 탈시설을 지원할 전문 상담자
를 배치하고(루디아의집의 경우 특별조사단 구성운영), 6개월내에(2021.8월까지) 분
산을 완료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제시되어야 함.
4. 분산-자립한 입소자들이 입주한 지원주택 등의 운영사업자 선정은 기존의 지원주
택운영사업자 공개 선정과정(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는 시설폐지 결의 후
참여)을 거쳐서 진행되어야 함.

3. 과거 시설비리와 인권문제가 됐던 사회복지법인 프리웰과 인강재단의
탈시설 추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합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촉구합니다.

□ 현황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운영하는 3개의 거주시설 중 향유의집은 2021.4.20.일자로 폐지를
앞두고 있음. 향유의집은 2018년 52명의 입소자에서 3차례에 걸친 지원주택 입주방법을 통하
여 탈시설을 추진함.
-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해결을 위하여 서울시는 지원주택 운영사업자를 신규선
정 시 폐지시설 직원을 고용승계하는 조건으로 사업참여를 유도함. 이는 탈시설 추진으로 발
생하는 노동자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하나의 방안이었음. (신규운영사업자 엔젤스헤이븐에 6
명의 노동자가 고용승계를 희망하였으나 3명만(50%) 고용 승계됨) 고용승계 범위나 직급에 따
라 제한적으로 고용승계를 하려는 신규운영사업자를 서울시가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행
되어 희망자 대비 50%만 승계된 상황임.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문제해결에
난관이 예상됨.
- 또한 이 방법만으로는 다양한 직군의 고용승계를 해소할 수 없음. (행정, 기능, 의료파트는
전원 고용승계 안되어 해고 통보됨) 따라서 차후의 탈시설추진을 위해서 서울시립 장애인거주
시설, 복지관 등 다양한 직군을 고용할수 있는 범위로 대안을 확장해 가야 함.

<향유의집 고용현황과 고용승계현황(2021.2.19.일기준)>

구분	합계	원장	사무국장	사무원	사회재활교사	상담평가요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생활재활교사	영양사	조리사	위생원	촉탁의사	관리인	운전원
정원	22	1	1	1	1	0	1	0	0	0	11	1	2	0	1	1	1
현원	30	1	1	1	1	1	1	1	1	1	14	1	2	1	1	1	1
고용승계인원	11 (38%)	X	X	X	X	1	X	X	X	X	10	X	X	X	-	X	X

- 향유의집 폐지 이후 해당 부지를 <지원주택 or 사회주택 + 돌봄서비스제공 기관>으로 개발하자는 제안을 수차례 서울시에 제안하였으나, 부지가 김포시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로 추진이 안되는 상황임.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동협업할 수 있도록 논의를 제안하였으나 추진되지 않고 있음. 서울시는 관외 장애인거주시설이 18개소이며 입주자 수는 50%에 이르기 때문에, 탈시설추진을 위해서 관외 시설들의 탈시설추진계획인 필요한 상황이며, 향유의집의 경우가 그 시범사업이 될수 있음.
- 프리wel, 인강원 뿐 아니라 제2차 탈시설5개년 계획 이행 목표인원 800명의 자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는 지원주택의 공급량을 확대하여야 함.

□ 요구사항

1. 탈시설추진 과정에서의 노동자 고용승계를 위해서 서울시의 대책이 필요함. (지원주택운영사업자 선정시 고용승계 의무화, 시립기관들의 고용승계 의무화 등)
2. 향유의집 부지개발을 통해서 탈시설을 촉진,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경기도 협업 모델로 개발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노력해야 함. (서울시 관외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추진 시범사업)
3. 서울시 탈시설 2차 5개년 목표인원 800명이 입주할수 있도록 지원주택 공급 확대해야 함.

4. 장애인지원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이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주택의 실질적인 예산지급이 필요합니다.

□ 현황

- 현재 장애인지원주택은 30호당 연간 8억 정도의 시비보조금이 지급됨. 이 비용은 인건비+운

영비로 기존 시설의 고용승계한 운영사업자의 경우는 고호봉의 노동자를 승계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족함. (총액 지급의 문제점) 그렇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꺼려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낮은 호봉의 인력을 채용하게 됨.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보행가능한 발달장애인 등 활동지원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안전, 화재, 실종 등을 고려할 때 주거코치를 야간상시 배치할 수 밖에 없으며, 근로기준법의 강화로 야간근무, 휴게수당 등은 법을 준수해야 함.

- 지원주택입주민의 질병이나 사고 발생 등 항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데 대한 긴급한 대처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긴급한 인력투여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탄력적이지 않는 문제로 긴급대처가 어려운 상황임.

□ 요구사항

1. 장애인지원주택 인건비는 장애인거주시설지급 방식(직급, 호봉에 따른 지급방식)으로 분리하고 현실에 맞게 지급하여야 함.

2. 운영비에 있어서 주거코치 등의 상시인력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그에 따르는 예산지원이 필요함.

3. 2021년 예산 수립시에는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예산 수립이 필요함.

1. 장애인의 기본상황

- 코로나19 유행 1년을 맞는 2021년 1월 초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47명(입소자 177명; 70%, 종사자 70명; 30%)에 해당함
-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장애인 환자는 약 4%에 불과하나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중 21% 이상은 장애인인 것으로 분석되어 비장애인에 비하여 사망률이 6.5배 높게 나타남
- 장애인은 이미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 상태가 취약하며, 일상생활을 의존해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더 위험함(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0).
-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율은 64.8%로 비장애인(74.1%)과 동등하지 않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4.0%로 현격하게 낮음(국립재활원, 2018). 특히, 만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지닌 장애인의 비율이 81.1%에 달하며, 1인당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기도 함(보건복지부, 2018).
- 때문에 장애인은 신체 유연성과 심폐기능 등 건강상태와 그 조건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어 있을 수 있고, 위급상황 시 자력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우며, 이를 보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과 지원이 부족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있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 이후 회복에 취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정태호, 윤누리, 박덕근, 2019).
- 이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코로나19 위기동안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조치방향을 권고하였으며, WHO 역시 장애인에게 적합한 추가적인 조치와 고려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2. 집단시설의 취약성

- 이런 배경에서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수용시설의 장애인은 매우 높은 집단 감염의 위험에 구조적으로 놓이게 될 수밖에 없음. 1차 대유행 시 대구경북만 보더라도 청도대남병원, 정보재활원, 대실한사랑요양병원, 제2미주병원, 서구한사랑요양병원, 북구배성병원, 수성요양병원, 김신요양병원, 대실요양병원 등 상당히 많은 곳에서 확진자 및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음(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0).
-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시설이나 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MBC, 2020. 4. 9.), WHO 역시 유럽 국가들의 코로나 사망자 절반이 장기 시설에서 나왔다고 밝히고 있음(KBS, 2020. 4. 24.). 유엔은 정신장애인 관련 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인 대상 시설 등에서 감염 및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로 해당 국가의 모든 사망자의 42%~5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도 함(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0).
- 국제장기돌봄정책네트워크(International Long Term Care Policy Network)가 수행한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시설, 정신병원, 장애아동 기숙학교 등 장기/집단시설을 아우른 조사, '케어홈 코로나19 관련 사망률 통계(2020년 6월)'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중 집단 시설 거주 사망자가 약 47%(조사 대상 26개국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사망자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었던 뉴질랜드와 슬로베니아에서도 사망자 대부분이 집단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뉴질랜드 72%, 슬로베니아 81%).

- 이 가운데 2020년 12월 한달 간 경기 안산 평화의집(입소자 47명 중 19명 감염), 서울 송파 신아재활원(입소자 117명 중 56명 감염), 경기 파주 아름다운누리(입소자 49명 중 31명 감염) 등 중대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이는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에 취해지고 있는 방역 조치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 2020. 3. 11. WHO 팬데믹 선언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취한 사회복지시설(집단수용시설)에 대한 공적 조치는 크게 코호트격리, 예방적 코호트격리, 입소자 통제로 구분할 수 있음. 코호트격리는 시설 내 확진자 발생 시 작동하며, 예방적 코호트격리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 추세에 있을 때 지자체가 각 시설에 일정기간 동안의 예방적 조치로서의 코호트격리를 권고하거나 행정명령하여 강제하는 것임.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팬데믹 이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오고 있으며 이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함없는 상태임.
- 이런 장애인거주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은 ‘집단 수용’이라는 구조적인 환경의 개선은 없이, 오로지 입소자에 대한 기본권을 자연스럽게 제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제대로 사회에 문제가 알려지지 못하고 있음.

3. 긴급 탈시설의 개념

- 국제 장애계는 코로나19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시설의 심각한 인권침해 및 생명권 침해를 우려하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ENIL, European Network on Independent Living)와 Validity 재단이 2020년 6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탈시설(Emergency Deinstitutionalisation)’을 촉구하는 웨비나 "통합을 통한 안전: 긴급 탈시설 사례를 중심으로(Safety through Inclusion: the Case for Emergency Deinstitutionalisation)"를 개최함.
- 본 세미나에서 단라미 바사루(Danlami Basharu)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은 ‘조기 퇴소’의 필요성을 지지하였다. 그는 장애인권리협약 제11조에 따라 대유행 기간동안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옥과 재활센터에서의 사람들이 풀려난 것에 반해 요양시설이나 정신병원 등의 경우에는 조기 퇴소/퇴원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0조, 11조, 19조에 따른 장애인의 긴급 탈시설 조치 필요성을 강조함.
- ‘긴급탈시설’이란 집단 감염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단기 탈시설을 지원하는 것임. 이 때,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단기간 시설 밖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자원을 제공해야 함. 긴급탈시설의 근거가 되는 규범은 CRPD 10조(건강권), 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19조(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임.
- 이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중인 2020. 3. 19.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간담회를 통해 긴급 재난 시 장애인 대책요구에서 감염병 예방책 중 하나로 “(1) 집단수용시설 대상 예방적 코호트격리 해제”와 “(2)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 내 임시거주시설 활용.마련을 통한 1인 1실, 1인 화장실 등이 갖추어진 주거환경 지원 및 인력 재배치”,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한시적 활동지원서비스 권한부여”를 요구한 바 있음.
- 긴급 탈시설은 기존 탈시설 정책의 방향 속에서 코로나19 등 거주시설 내 집단 감염 및 사회적 참사를 야기하는 현 팬데믹 등 급박한 환경 변수를 고려하여 집단 감염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즉각적인 탈시설 조치를 취함으로써 ‘단기간 시설 밖에서’ 우선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 나아가 재난으로부터의 더 나은 회복을 위하여 UN에서 강조하고 있는 집단수용시설 폐지 및 탈시설의 가속화와도 관련된 것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단기적으로 시설을 떠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즉각적으로 제공받는 것과 이후 지역사회 정착 및 통합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과 접근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즉, 긴급 탈시설은 팬데믹 위기동안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0조(건강권), 제11조(위험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제19조(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를 근거로 집단 감염에 취약하고 위기 시 인권 침해 심화의 우려가 높은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을 위한 '구조적인 감염 예방 조치'이자 동시에 '근본적인 재난 회복을 위한 탈시설 가속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 긴급탈시설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UN CRPD) 23차 세션에서 꾸려진 탈시설 워킹그룹(Working Group for Deinstitutionalization) 등에서 그 필요성을 언급한 정책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유럽 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ENIL)에서도 UN CRPD 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19조(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중요성)에 의거하여 탈시설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19조 일반논평 5 “당사국이 긴급 탈시설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한편,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 코호트격리 해제 및 긴급탈시설 이행을 위해 ‘한국장애포럼(KDF)’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올 1월, 74명의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된 서울 송파 신아재활원의 코호트 격리가 그 원인임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고자 “유엔 장애인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건강권 특별보고관, 주거권 특별보고관에게 보내는 긴급진정서”를 접수하였음. 주요 지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단시설 코호트 격리에 따른 감염확산 위험 (2) 시설 외부와의 소통 차단 (3) 정보 폐쇄성 및 정보 접근성 침해 (4) 장애인의 건강권 침해 (5)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침해 (6)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침해 |
|--|

- 위 소식을 접한 스티븐 알렌(Validity Fondation 대표), 에릭 로젠탈(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대표이사) 등은 모두 한국의 긴급 탈시설 이행 촉구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전세계적 공조 체계 등을 꾸릴 수 있도록 연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함.

4. 세부 요구사항

- (긴급 탈시설의 취지) 팬데믹 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집단 감염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즉각적인 탈시설 조치, 즉,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팬데믹 기간 동안의 집단 감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① 감염병 위기 동안 장애인거주시설 (재)입소 및 거주 금지 명령

- 감염병 유행 기간 동안 장애인거주시설 재입소 및 집단적인 거주 금지 명령(재난안전법 제41조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명령 발동)
- 장애인거주시설 전체 대상 긴급 탈시설 추진계획 수립 및 즉각 조치

② (예방적)코호트 격리 및 입소자 기본권 침해 즉각 중단

- 확진자 발생 시 코호트격리가 아닌 즉각적인 분산조치 실시
- 입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예방적 코호트격리 및 외출, 외박, 면회 금지 등 공적 조치 전면 철회

③ 모임금지·집합금지 원칙에 부합하는 긴급 탈시설 즉시 이행

-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LH, SH 등을 통하여 중대본에서 권고하는 1인 1실, 1실 1화장실 등이 갖추어진 유희 주거공간 제공 : 한시적 주거 이용권한 부여, 기존 시설 종사자 인력 재배치
-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한시적으로 법정 급여, 지자체 추가급여,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체계 등을 활용하여 1:1

지원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권한 부여 및 지원 (조기 퇴소 조치 시에도 서비스 이용 가능)

④ 긴급 탈시설 이후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 및 정착 지원

- 긴급 탈시설한 거주인 전원에 대한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개인의 의사 및 면역력 등 필요상황에 따라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탈시설 정책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인프라 연계 지원
- 긴급 탈시설 추진 협조 시설법인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 정책 마련 및 지원